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463

발의연월일: 2020. 11. 18.

발 의 자:이병훈·이상헌·김승원

양정숙 • 박완주 • 박 정

신정훈 · 신영대 · 주철현

민홍철 • 이장섭 • 민형배

김철민 • 박성준 • 전혜숙

유정주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문화산업 업체들은 비상장 중소기업이 많으며, 기업 형태보다는 개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가 대다수임.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2006년) 후, 재정지원 예산 확보가 어렵고 정책금융 예산 투입 부족으로 정책 실효성확보 및 유사 시 탄력적 정책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기업에 대한 대응도 신·기보 등에 의존적이며, 문화산업은 신·기보 및 은행 프로그램의 후순위 대상으로 수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

이에 담보력이 없는 중소·영세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정부로부터 국고를 출연 받아 보증기관에 재출연하여 보증 부 대출을 확대하는 보증사업이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항 및 제7항).

법률 제 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시설 및 운영"을 "시설·운영 및 제6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6. 콘텐츠산업의 투융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 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 른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를 지원하는 사 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	6
업을 한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16. 콘텐츠산업의 투융자 활성
	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
	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
	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
	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
	하거나 융자를 지원하는 사
	<u>업</u>
<u>16.</u> (생 략)	<u>17.</u> (현행 제16호와 같음)
⑦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 <u>시</u>	⑦ <u>시설·</u>
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운영 및 제6항 각 호의 사업
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